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점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보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점자법」이 개정(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 2023. 3. 28.)됨에 따라, 점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기관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 교육 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점자자문위원회(이하 ‘점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의3(점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점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점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점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점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점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은 점자위원회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점자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점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점자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점자자문위원회(이하 ‘점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신 설></u>	<u>제2조의3(점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u> <u>① 점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u> <u>② 점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 <u>1.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으로 한다.</u> <u>2. 위촉위원은 점자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사람</u>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50% 이상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위원장은 점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점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위원장은 점자위원회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점자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점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